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초2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기준이 조례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체계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에 2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와 누적 10,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를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단기간 집중적으로 활동한 봉사자와 장기간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봉사자를 각각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누적 10,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혜택 지원과 근조기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간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봉사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 제도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활동 실적에 따른 합리적 차등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발적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공동체 가치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